

2024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(1차)

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4년 03월 04일

울진군수

1. 사업개요

- 사업비 : 200백만원(군비)
- 사업기간 : 2024. 3. ~ 12.
- 지원금액

구분	지원금액	비고
가정용 감량기	최대 40만원	구매금액의 50% 범위 내
사업용 감량기	최대 70만원	

- 추진배경 :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 활성화로 쓰레기 발생량 감소 도모
- 관련근거 : 『울진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』

2. 추진계획

- 신청기간 : 2024. 3. 4. ~ 2024. 3. 29(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)
- 신청방법 :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(우편메일 접수 가능)
 - ※ 우편, 메일 접수 시 해당 읍면사무소 선 문의
- 지원대상
 - 1) 가정용: 공고일 기준 울진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 또는 구성원(1가구 당 1대 지원 원칙)
 - ※ 세대 분리의 경우에도 동일 주소지인 경우 1대만 지원

2) 사업용: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울진군에 위치하고 관련 인허가 (영업신고 등)를 받아 운영 중인 사업주 (1사업장 당 1대 지원 원칙)

※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제외

○ 지원대상 감량기기

1) 처리방식

- 가열·건조, 발효 또는 발효건조나 퇴비화·사료화 또는 부숙의 방식을 통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감량화하는 기기로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

※ 『하수도법』제33조 및 『울진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』 제5조에 따라 인증제품이라도 단순 분쇄식 시설(주방용 오물분쇄기) 및 싱크대 부착방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
2) 처리기준

- 가열에 의한 건조방법 : 부산물 수분함량 25% 미만

- 발효 또는 발효건조나 부숙 등의 방법 : 부산물 수분함량 40% 미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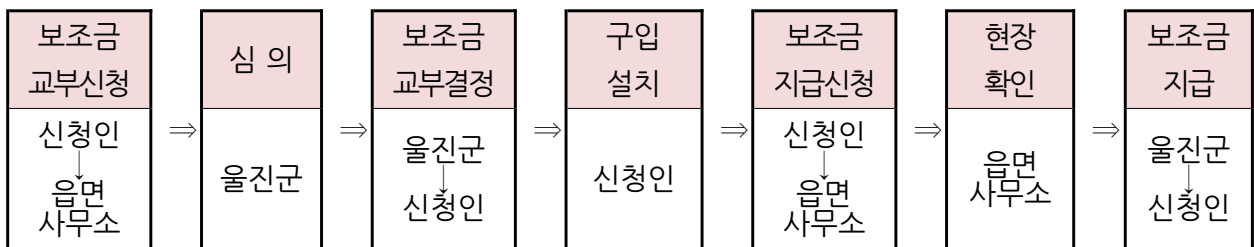
3) 품질인증제품

- 가열·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제품으로 **공인 기관 품질인증 1개 이상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**

※ 품질인증 : K마크(한국산업기술시험원), 환경표지(한국환경산업기술원), Q마크 등

※ 안전인증 : KC마크(전기용품 안전기준)

3. 세부추진 내용



1) 지원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·통보되면 보조사업자가 자부담으로 전액 지불하여 우선적으로 감량기를 구매(설치)하여야 하고, 보조금 지급 요청서 등 관련 서류를 1달 이내에 제출하여야 보조금 지급

※ 대상자 통보 전 사전 구매(설치)한 감량기에 대한 보조금 지원 불가

※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 1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1개월 경과 시 사업 포기 의사로 간주

2) 지원 대상 감량기 조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, 미충족 감량기 구매 시 보조금 지원 불가

3) 지원 대상 조건에 맞는 감량기를 보조사업자가 직접 선택하여 구매하여야 하므로 구매 전 업체에 지원 대상 가능 여부 확인 필요

4) 유의사항

- 보조금 지원대상 감량기인지 제품 구매 전 판매업체에 확인이 필요(감량기의 성능 및 처리방법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)
- 보조금은 총 구매비의 50% 범위에서 신청 가능(가정용 최대 40만원, 사업용 최대 70만원)하며, 초과분은 자부담
-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
- 보조금을 지급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신청 불가
- 허위,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이 체납된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
- 업체와 결탁하여 가격을 부풀리거나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등 부당행위 적발 시 『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고 동일사업 재신청 불가
- 감량처리기의 운영상 발생하는 유지관리비(A/S, 전기세, 통신비, 소모품)는 지원하지 않음. (구매 업체에 직접 사전문의)
-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급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 취소.
-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보급·운영 가이드라인(2020. 3. 환경부)」에 따름
- 문의처 : 울진군 환경위생과 자원순환팀(☎054-789-6132)

관할 읍·면사무소 울진읍 (☎ 054-789-4013)

평해읍 (☎ 054-789-4113)

북면 (☎ 054-789-4213)

금강송면 (☎ 054-789-4314)
근 남 면 (☎ 054-789-4413)
매 화 면 (☎ 054-789-4523)
기 성 면 (☎ 054-789-4613)
온 정 면 (☎ 054-789-4732)
죽 변 면 (☎ 054-789-4812)
후 포 면 (☎ 054-789-4912)

5) 신청서류

-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시

- ①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지원사업 신청서 1부 [서식 1]
- ② 사업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지원사업 신청서 1부 [서식 2]
- ③ 감량기 견적서 및 규격서 각 1부
- ④ 지방세(세외수입) 체납 여부 확인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[서식 3]
- ⑤ 사업계획서 [서식 4]

-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시 [감량기기 구매 후]

- ① 음식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청구서 [서식 5]
- ② 사업완료 확인서 [서식 6]
- ③ 보조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 [서식 7]
- ④ 통장사본(신청인 명의)

[서식4]

사업계획서

【 개인(사업자)명 : (대표 :)】

1. 사업명(개요) :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

2.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

3. 보조사업 수행 계획 및 사용방법

감량기기 구매 및 설치 내역	상품명		제조사	
	판매점명		감량방식	
	설치장소			

4. 산출기초

(단위 : 원)

보조금 신청내역	구매금액			
	보조금 신청금액		자부담 금액	
	입금계좌	은행명:	계좌번호:	예금주:

※ 사업신청자와 예금주가 같아야 함

5.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 : 해당없음

년 월 일

울진군수 귀하

[서식 5] 울진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[별지]

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보조금 청구서

신청인	성 명		생년월일	성 별
	주 소 (연락처)			
세대주	성명		세대주와의 관 계	
감량기기 구매 및 설치 내역	상품명		제조사	
	판매점명		감량방식	
	설치장소		설치일시	
보조금 신청내역	구매금액			
	보조금 신청금액		자부담 금액	
	입금계좌	은행명:	계좌번호:	예금주:
<p>「울진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」 제7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을 위해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청인 : _____ (서명)</p> <p style="text-align: left; margin-top: 10px;">울진군수 귀하</p>				
<p>※ 구비서류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업완료확인서 1부. 2.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. 3. 청렴이행 서약서 				

[서식 6]

사업완료보고 및 보조금 정산서

사업명 2024년도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설치 지원사업

설치장소

□사업실적보고

계 획	실 행	증 감	설 치 일	비 고
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 구입	1대 구입	-		

□ 보조금 정산서

(단위:원)

보조금교부결정액(A)			집 행 액(B)			증 감(A)-(B)		
계	보조금	자부담	계	보조금	자부담	계	보조금	자부담

□ 자부담 방법:

상기와 같이『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』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 실적 보고 및 정산서를 제출합니다.

2024년 월 일

보조사업자 주소 :

성 명 :

(인,서명)

생년월일 :

울진군수 귀하

사 업 완 료 확 인 서(구매내역)

구매영수증 붙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판매점명 : ○ 판매책임자 : ○ 판매자연락처 : ○ 상품명 : ○ 구매연월일(결제일시): ○ 제품 고유번호(S/N) :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color: blue;">※ 입금계좌 통장사본 첨부</p>
구매영수증(현금영수증 또는 카드매출전표 가능, 간이영수증 불가)	
제품번호 사진	제품 설치사진

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 청렴이행서약서

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울진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, 귀 울진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.

아울러,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울진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,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.

< 벌칙 규정(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~제40조) >

○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(제37조~제40조)

□ 제37조(벌칙)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

□ 제38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

- 1. 제13조(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)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
- 2. 제21조(재산 처분의 제한)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

□ 제39조(벌칙) ① 제14조(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) 또는 제15조(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등)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

- 1. 제16조(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) 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
- 2. 제16조(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) 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
- 3. 제17조(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) 또는 제29조(검사)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

□ 제40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·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□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년 월 일

신청자

성 명(사업장명)

(서명 또는 인)

울진군수 귀하